

기조강연

"전환기의 사회갈등 해소를 위한 정책과제"

박재욱 | 충남대학교 사회학과 교수, 갈등예방과 해결을 위한 정책포럼 준비위원장

공공갈등(public dispute)이란, 개인 또는 특정 집단이 아닌 공중의 이해관계를 둘러싸고 일어나는 갈등을 말하며, 주로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고, 공공기관의 법규 제정 및 개정, 정책 수립 및 변경, 공공사업의 계획 및 시행을 둘러싸고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.

이러한 공공갈등의 특성은 이해당사자(stakeholders)의 불특정성(광범성)으로 최근 민간부문에서보다 공공부문의 갈등이 더 장기화되는 경향이 많으며, 갈등 장기화의 주요 요인은 갈등관리시스템의 불균등 발전에 기인한다.

따라서 대안적 분쟁(갈등) 해결방법(ADR)의 도입이 중요한 바, 대안적 분쟁 해결의 의미는 재판 등 관행적 분쟁해결의 단점을 보완하고, win-win을 목표로 한다. 따라서 협상, 조정, 조정적 중재, 중재 등을 통해 당사자간의 합의를 통한 분쟁해결을 목적으로 하고, 이해당사자 외에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으며(조정, 조정적 중재 및 중재의 경우), 어디까지나 합의에 의해 정한 기본규칙(ground rule)에 따라 절차가 진행된다.

그러므로 공공갈등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조건은, 첫째 전문인력 양성 및 공급, 둘째 전문적 지원기구 설치 및 운영, 셋째 사회적 인프라로서 신뢰, 즉 선의(good will)에 대한 믿음 형성으로 사회자본(social capital)의 형성, 넷째 문화적 인프라로서 갈등보다 평화를 중시하는 분위기 확산과 화해, 타협, 양보, 관용, 승복의 가치 확산이 중요하다.